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437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서인석, 최낙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영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소1074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5톤 대형화물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가리키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가리키는 경우를 포함하여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15. 13:22경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 편도3차로상 3차로에 도로정체로 일시 멈추어 있었고, 피고 차량은 차도 아닌 곳에서 차로로 진입을 하고자 대기 중인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다가가 위 차량 우측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 전면 우측 모서리 가까이 붙여놓은 후 멈추어 서있었다. 이후 정체가 풀리자 원고 차량은 천천히 3차로 안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기 시작했고, 피고 차량도 그대로 직진 주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우측 문 하단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와 범퍼 측면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12,2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후 G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G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2020. 2. 5. 일단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원고 차량 과실 20%에 상응하는 2,340,000원[$(12,200,000\text{원} \times 20\% - 100,000(\text{사단법인 H 지급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이 20%임을 전제로 한 구상금으로 2,3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에 차체를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진입시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이를 해태한 채 우회전을 하며 차도로 진입함에 있어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도 차량의 진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진행하거나 일시 대기 중인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그런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동태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시점,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시야확보 상태, 손해의 정도와 범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을 15%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금액에 관한 판단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차량의 과실을 15%로 보는 이상 피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손해액의 15%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330,000원[= 총 손해액 12,200,000원(피고 지급 보험금 11,7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15% - 자기부담금 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초과하는 2,3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010,000원(= 2,340,000원 - 1,330,000원) 및 그 중 400,00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2. 26.부터(원고는 구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선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구상금을 수령한 것은 G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10,000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2020. 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판사 김정민